

■ 소액수익계약 대상업체 조합추천제도

I 개요

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시,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(소기업, 소상공인)를 추천받아 수익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업, 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

■ 관련법령
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
-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2
-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

II 주요내용

○ 구매대상

-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
○ 추천방법

- 공공기관의 '대상업체 추천요청', 업체의 '추천신청', 협동조합의 '대상업체 추천'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내에 설치된 '소액수익계약 추천시스템'을 통해 처리

○ 업무처리 절차



1. 공공기관의 '대상업체 추천요청'

- 제품선택 : 세부품명(G2B번호)별로 구매 제품 선택
- 조합선택 : 선택한 세부품명(G2B번호)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
- 추천요청업체수 : 5개업체 이상(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합원사 2개 이상)

2. 업체의 '추천신청'

-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추천신청 www.smpp.go.kr

3. 협동조합의 '업체 추천'

- 신청업체에 대해 자격심사 후 업체추천

*자격

- 조합원사 및 일부 비조합원사(중소기업협동조합 법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)
- 해당 세부품명(G2B번호)에 대해 직접생산증명서 보유업체
- 중소기업(소기업 또는 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여부
- 조합 규정등에 따른 회비 및 수수료 미납사항 여부
- 세부품명별(G2B번호별)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이내 업체
- 기타 수요기관 요구조건 충족업체(예;지역제한 등)

※ 2016년도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한도(횟수,금액)

중기간경쟁제품명	세부분류(중기간경쟁제품)		연간 업체별 한도	
	물품분류번호	세부품명	추천횟수(회)	한도금액(원)
출입통제시스템	4617161901	출입통제시스템	6	200,000,000
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	4617162201	영상감시장치	27	925,222,260
	4617161002	보안용카메라	6	200,000,000
	4616151601	차량번호판독기	6	200,000,000

4.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업무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 및 계약

※ 계약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추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.

회원사 : 계약금액의 3%

비회원사 : 계약금액의 5%

5.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

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신청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.